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7호 2026. 2. 2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7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9호)

공 고

-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39호)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62호)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87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38-2번지 일원의 풍양 한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예천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방재시설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한샘1	한샘천	소하천	풍양면 혼효리	풍양면 낙상리	-	5.16	13~7 3	190,590	-	

■ 결정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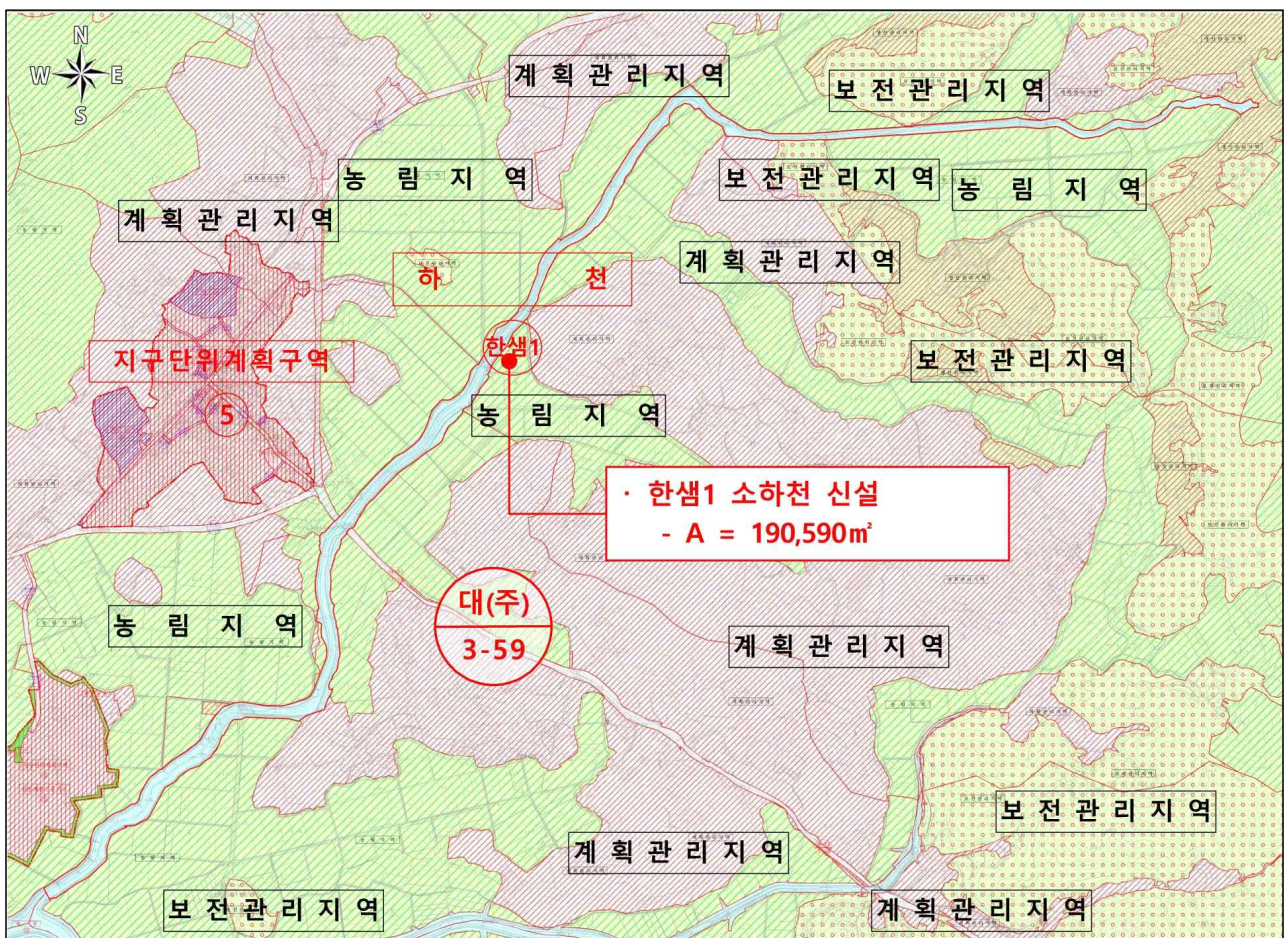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한샘1	한샘천	· 소하천 신설 - A = 190,590㎡	· 풍양 한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소하천 신 설

2.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도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송평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 건설교통과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66, 667번지
점용면적	38㎡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사업개요	호명 금능1리 소교량 철거공사
점용기간	2026년 02월 26일 ~ 2026년 05월 31일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doddos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 054-650-6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의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u>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u> <u>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 하여 예천군 <u>2050 탄소중립녹색</u> <u>성장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제9조(<u>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u> <u>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 ----- ----- ----- ----- <u>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천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당직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직 대체휴무 사용 기한 10일로 확대(안 제5조)

- 2025 노사발전협의 결과 반영

나.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변경(안 제12조, 별표 1)

- 실제 운영하지 않는 당직 운전원 편성 규정 삭제
- 실과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당직 근무 추가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 전화 : 054-650-6832
- 팩스 : 054-650-6309
- 전자우편 : thsqhfo@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본문의 단서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시 당직 운전원이 아니라도”를 “필요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 직 근무자 편 성 기 준 (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그 밖의 장소
		당직 사령	당직 반장·반원	당직반원	
평일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1명 (5급)	반장 1명(6급) 반원 1명	1명 (재택)	1명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 그 밖의 장소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천박물관,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등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및 휴무) ① (생략)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및 휴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 업무 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 10일 ----- ----- ----- -----.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① <u>공용 차량</u>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① <u>공무용 차량</u> ----- ----- ----- -----.
② 당직근무자는 <u>필요시 당직 운전원이 아니라도</u>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 <u>필요시</u> ----- -----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10조)

-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허용
- 동물놀이터 설치가능 근린공원 면적 기준 : 1만제곱미터 이상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 전화 : 054-650-6326
- 팩스 : 054-650-6319
- 전자우편 : chp771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2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2.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